

인용보도시 정보 출처 명시 완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 추진과정과 내용

김형기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위원회 위원장,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언론계의 자율 규약인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이 최근 일부 개정됐다.

신문윤리강령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7년이다. 당시 한국신문편집인협회(편협)가 창립하면서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만들었고, 4년 뒤인 1961년에 구체적 실천지침인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했다. 그 해에 언론윤리 자율 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함께 발족했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그 후 30년 넘게 기자들의 취재 보도에 전범 역할을 하다가 1996년 한차례 대대적인 개정을 거쳤다. 바뀐 언론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편협은 1995년 6월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신문윤리강령 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개월간 각계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편협 등 3개 단체는 1996년 4월 8일 제40회 신문의날 기념석상에서 새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선포했다. 개정 강령은 언론의 책임을 새삼 강조하고, 규제대상을 종전의 28개 부분에서 60개 부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었다. 언론이 사회적 위상과 힘에 걸맞도록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5인 개정위원회 구성

그로부터 10년 남짓 흐른 지금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또 한번 개정 요구에 부닥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미디어환경 변화가 매우 급격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뉴스의 유통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자연히 윤리요강의 일부 조항들이 언론현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문윤리위원회로서는 엄존하는 기존 요강에 맞추어 개별 기사들의

가장 큰 쟁점은 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이었다. 위원회는 결국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게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 조항을 개정했다.

윤리준칙 위반여부를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적을 받은 언론사들이 과거의 잣대에 따른 무리한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편협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8년 7월경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윤리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언론사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이후 정식으로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으로 김형기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위원장), 박원재 동아일보 경제부장, 설원태 경향신문 특집기획부 선임기자, 정병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채인택 중앙일보 피플·위크엔 에디터(가나다순) 등 중앙일간지 중진언론인 5명을 위촉했다.

개정위원회는 일선기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윤리준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끝에 2009년 1월 23일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편협은 이 시안에 신문협회와 기자협회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1월 28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위원회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강령의 존폐 여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사실상의 제정에 준하는 전면적인 개정을 거친 바 있는 현행 강령과 실천요강에 대해 그 취지와 결과물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독자들의 반론요구와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 및 소송이 급증하는 등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추궁 장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사법적 수준의 강제를 가하는 규제라기보다는 언론 산업 종사자들이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수준을 제시하는 선언적 자율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제한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공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가장 큰 쟁점은 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이었다. 기존 요강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인용할 수 있는 뉴스소스가 AP같은 유수한 통신사나 NYT같은 세계적인 신문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검색어 하나면 온라인의 바다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들이 넘쳐흐른다.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나 각종 단체들은 대부분 자기네 홈페이지나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해 공식발표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무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다. 개정위원회는 그런 ‘공개된 1차정보’를 토대로 작성하는 기사까지 일일이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를 집중 토론했다. 위원회는 결국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조항 상세 내역

개정전	개정후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③(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 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③(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신설〉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④(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④(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⑤(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피의사실의 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②(판결문 등의 사전보도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판결문 등의 사전보도금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에 대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보도보류시한의 연장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시한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①(보도보류시한의 연장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혐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혐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정신이상자의 익명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삭제〉
	〈신설〉④(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p>⑤(피의자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⑥(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통합>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p>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p>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p> <p>②(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보류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p>	<p>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p> <p>②(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p>

하지 않아도 되게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 조항을 개정했다.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⑤항(피의자의 촬영금지)도 의미 있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요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 요강의 표현이 불필요하게 단정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현행범도 사진을 보도하면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준칙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를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보도할 때에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꿨다. 피의자 사진 공개 여부를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적 판단에 위임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얼마 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사진 공개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흉악범 사진은 보도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위원회가 선견지명을 보여준 셈이다.

최종 확정된 개정 강령과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위의 두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신문윤리강령에서는 용어 가운데 ‘평론’을 ‘논평’으로 바꾼 것 외에 다른 개정 조항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먼저 용어를 통일했다. 강령과 실천요강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평론’을 ‘논평’으로 바꿔 통일했다. 강령과 실천요강의 각 조항에서 혼용되고 있는 ‘언론인’과 ‘기자’ ‘편집자’ 표현 가운데 부득이 ‘언론인’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을 제외하고 ‘기자’로 통일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모든 조항에서 ‘언론인’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기자협회는 모두 ‘기자’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개정위원회의 논의 결과 원칙적으로 ‘기자’로 통일하되, 현실적으로 꼭 뉴앙스를 살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언론인’ 표현을 살려두자는 쪽으로 결정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조항 상세 내역은 <표>와 같다.^{NFB}